

“선별적 보호를 넘어 모두의 복지 보장” 김민석 총리,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주재

-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모두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 심의
- 향후 40년('26~'65) 간 사회보장제도 소요 재정 추계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 발표

□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2일(화) 오후, 이재명 정부 첫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며 사회보장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위 기구의 시작을 알렸다.

* 범정부 사회보장정책을 수립·조정하고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및 민간위원 등 총 30인 이내로 구성(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제35차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 일시/장소 : '26.5.12(화) 15:0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회의안건 : 3건
 - (심의1) 제3차('26~'30)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 (심의2)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 (보 고) 사회보장 신설·변경 사전협의제도 개편(안)

○ 또한, 김 총리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주재하기 전에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어 중요한 역할을 맡아준 민간위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회보장 시스템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위원회의 책임감은 막중하므로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복지 철학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심의하였고, 그 외에도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및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을 논의하였다.

○ 안건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안건 1.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

- 정부는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 비전과 함께 ①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②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③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등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
- 첫째,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보장’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보장성 확대를 통한 기초생활안전망 강화 △지역 기반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참여와 기여를 반영한 새로운 소득모델 도입 검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득 안전망을 강화한다.
- 둘째,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를 위해 △국가와 지역 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국민 중심 의료·건강 서비스 확립 △지역기반 생활밀착형 일상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 셋째,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을 위해 △AI·데이터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강화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비전 및 3대 전략 >

비전	모두의 복지, 함께 잘 사는 사회	
목표	“넓게 보장”하고 “생애 숲 과정을 함께하는” 복지 실현	
3대 전략 9대 중점과제	국민의 삶을 지키는 소득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격차 해소를 위한 두터운 소득 보장 ■ 일자리 창출·지원을 통한 소득 안정 ■ 새로운 소득 및 지역협력모델 도입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기본서비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와 지역사회가 책임지는 돌봄서비스 지원 ■ 국민중심 의료·건강서비스 확립 ■ 지역기반 생활밀착서비스 확대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보장 기반 혁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찾아가는 복지지원체계 구축 ■ 지방분권시대 균형발전 및 복지격차 완화 ■ 선제적 관리를 통한 사회보장제도 지속가능성 확보

- 오늘 논의된 수정계획안은 5월 말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발표될 예정이며, 이후 중앙부처의 연차별 시행계획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회 보장계획과 연계하여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계획(안) 세부 내용은 국무회의 이후 공개 예정

< 안건 2.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안) >

□ 사회보장 재정추계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 3년 주기로 실시하며, 국제 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SOCX) 9대 정책영역*을 기준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중장기 재정 소요를 전망한다.

* 노령, 보건, 가족, 유족, 근로무능력,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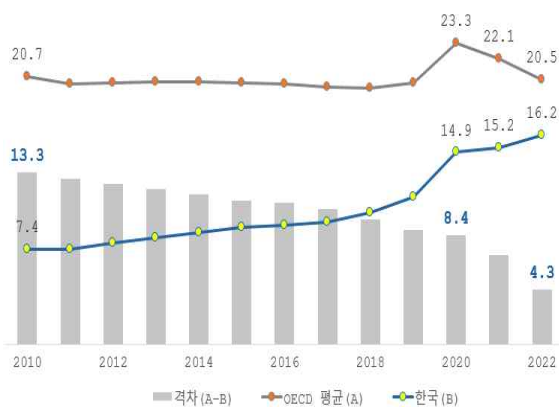
○ 금번 제6차 재정추계는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2026년부터 2065년까지의 사회보장 지출 규모를 추계하였다.

□ 추계 결과,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의 GDP 대비 비중은 2026년 16.2%에서 2065년 27.0%로 약 1.7배 확대되며, 2040년에는 OECD 평균 수준('22년 20.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정책영역별로 ▲노령·보건 영역은 증가 ▲가족 영역은 감소하는데, 이는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

- (노령) 고령인구 비중 확대 및 연금 수급자 증가로 '26년 4.5% → '65년 11.8%
- (보건) 의료 이용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26년 5.8% → '65년 9.9%
- (가족) 저출생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로 '26년 1.8% → '65년 1.1%

<사회보장 지출 추이(10~22 OECD 평균, 한국)>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26~'65)>



□ 향후 제6차 재정추계 결과는 재정 전문가 중심의 논의 체계인 '사회보장 재정 포럼'을 통해 심층 논의와 추가 분석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세부 내용은 붙임자료 참고

< 안건 3.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편(안) >

□ 정부는 그동안 모든 사회보장사업에 적용되던 일률적인 사전협의 절차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하였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필요한 복지 혜택이 더 빠르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주요 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지자체 공무원이 복지 정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지역 전문가가 직접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전문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한 사업은 협의 기간을 30일 이내로 대폭 단축하여 신속하게 처리한다.
- ② 주민 생활과 밀착된 소규모·일회성 사업은 지자체가 먼저 시행한 뒤 사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전국적으로 비슷한 사업들은 표준 모델을 만들어 행정 효율성을 대폭 높인다.
- ③ 공무원들이 지역 특성에 꼭 맞는 우수한 사업을 만들 수 있도록 표준 설계 지침을 제공한다. 특히, 다양한 복지 데이터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여, 근거에 기반한 과학적이고 정교한 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 ④ 나아가, 국가복지체계 정합성 유지가 필수적인 사업 외(外)에는 지자체 자율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네거티브 협의방식’으로의 전환을 검토한다.

□ 오늘 회의에서 김민석 총리는 “제3차 기본계획 수정계획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안정적 재정 뒷받침과 함께 타(他) 위원회·기본계획과의 연계성 및 정합성을 세심히 살펴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 (붙임)
- 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2.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 3.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 4. 협의제도 개편 프로세스 비교

담당 부서 <총괄>	사회조정실	책임자	과장	한동희	044-200-2287
	사회복지정책관실	담당자	사무관	허창기	044-200-2312
<공동>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총괄과	책임자	과장	김승일	044-202-2450
		담당자	서기관	김수영	044-202-3718
		담당자	전문위원	한지현	044-202-3721
		담당자	전문위원	홍영주	044-202-3725
		담당자	전문위원	박이슬	044-202-3723
		담당자	전문위원	신지명	044-202-3730
<공동>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	책임자	과장	신지명	044-202-3730
		담당자	서기관	김희수	044-202-3743

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개요

- **[목적]**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범부처 차원의 주요 사회보장 시책을 심의·조정(「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
- **[구성]**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위원 15인, 민간위원 15인 등 총 30인 이내

본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국무총리 - 부위원장 :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 간사 :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구성 : 30인 이내(총리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5, 민간위원 1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부위원 (15명)</td> <td>국무총리(위원장), 교육부·복지부·기획처·법무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장관·국조실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민간위원 (15명)</td> <td>사용자·근로자 대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청년기본법상 청년 등</td> </tr> </table>	정부위원 (15명)	국무총리(위원장), 교육부·복지부·기획처·법무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장관·국조실장	민간위원 (15명)	사용자·근로자 대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청년기본법상 청년 등						
정부위원 (15명)	국무총리(위원장), 교육부·복지부·기획처·법무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기후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장관·국조실장										
민간위원 (15명)	사용자·근로자 대표,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청년기본법상 청년 등										
실무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 : 2인(복지부장관, 본 위원회 민간위원 중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위원) * 간사 : 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 구성 : 30인 이내(복지부장관,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 15, 민간위원 15)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정부위원 (15명)</td> <td>복지부 장관(공동위원장), 교육부·법무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기획처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민간위원 (15명)</td> <td>민간 위원장(공동위원장), 사용자·근로자 단체 추천, 지자체 추천, 사회복지, 보건의료, 경제, 재정, 법률, 고용 등 관련 전문가</td> </tr> </table>	정부위원 (15명)	복지부 장관(공동위원장), 교육부·법무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기획처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민간위원 (15명)	민간 위원장(공동위원장), 사용자·근로자 단체 추천, 지자체 추천, 사회복지, 보건의료, 경제, 재정, 법률, 고용 등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15명)	복지부 장관(공동위원장), 교육부·법무부·행안부·보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기후부·노동부·성평등부·국토부·기획처 차관, 국조실 국무1차장										
민간위원 (15명)	민간 위원장(공동위원장), 사용자·근로자 단체 추천, 지자체 추천, 사회복지, 보건의료, 경제, 재정, 법률, 고용 등 관련 전문가										
전문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5개 분야(기획, 제도조정, 평가, 재정, 통계행정데이터, 각 15인 이내) 75인 이내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기획</td> <td>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중장기 의제 발굴 및 공론화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제도조정</td> <td>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주요 사회 보장 정책의 조정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평가</td> <td>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조건부 협의 사업 등에 대한 심층평가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재정</td> <td>사회복지지출(SOCX) 및 재정추계, 자원조달 방안 등</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통계·행정데이터</td> <td>사회보장 통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td> </tr> </table>	기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중장기 의제 발굴 및 공론화 등	제도조정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주요 사회 보장 정책의 조정 등	평가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조건부 협의 사업 등에 대한 심층평가 등	재정	사회복지지출(SOCX) 및 재정추계, 자원조달 방안 등	통계·행정데이터	사회보장 통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기획	사회보장 관련 주요 계획, 중장기 의제 발굴 및 공론화 등										
제도조정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 주요 사회 보장 정책의 조정 등										
평가	사회보장제도의 평가, 조건부 협의 사업 등에 대한 심층평가 등										
재정	사회복지지출(SOCX) 및 재정추계, 자원조달 방안 등										
통계·행정데이터	사회보장 통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활용 등										

- **[기능]** 사회보장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
 - 사회보장 기본계획,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우선순위 설정, 중앙 행정기관 간 사회보장정책 심의,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비용 분담
 - 사회보장제도 평가 및 개선, 사회보장의 재정추계 및 자원조달 방안, 사회보장 전달체계 운영 및 개선, 사회보장통계 등
- **[연혁]** 사회보장기본법 전부개정안 시행('13.1.)으로 출범
 - 제1기('13.5.1~'15.4.30), 제2기('15.6.10~'17.6.9), 제3기('17.12.26~'19.12.25), 제4기('20.3.9~'22.3.8), 제5기('22.11.22~'24.11.21), 제6기('26.1.23~'28.1.22)

붙임 2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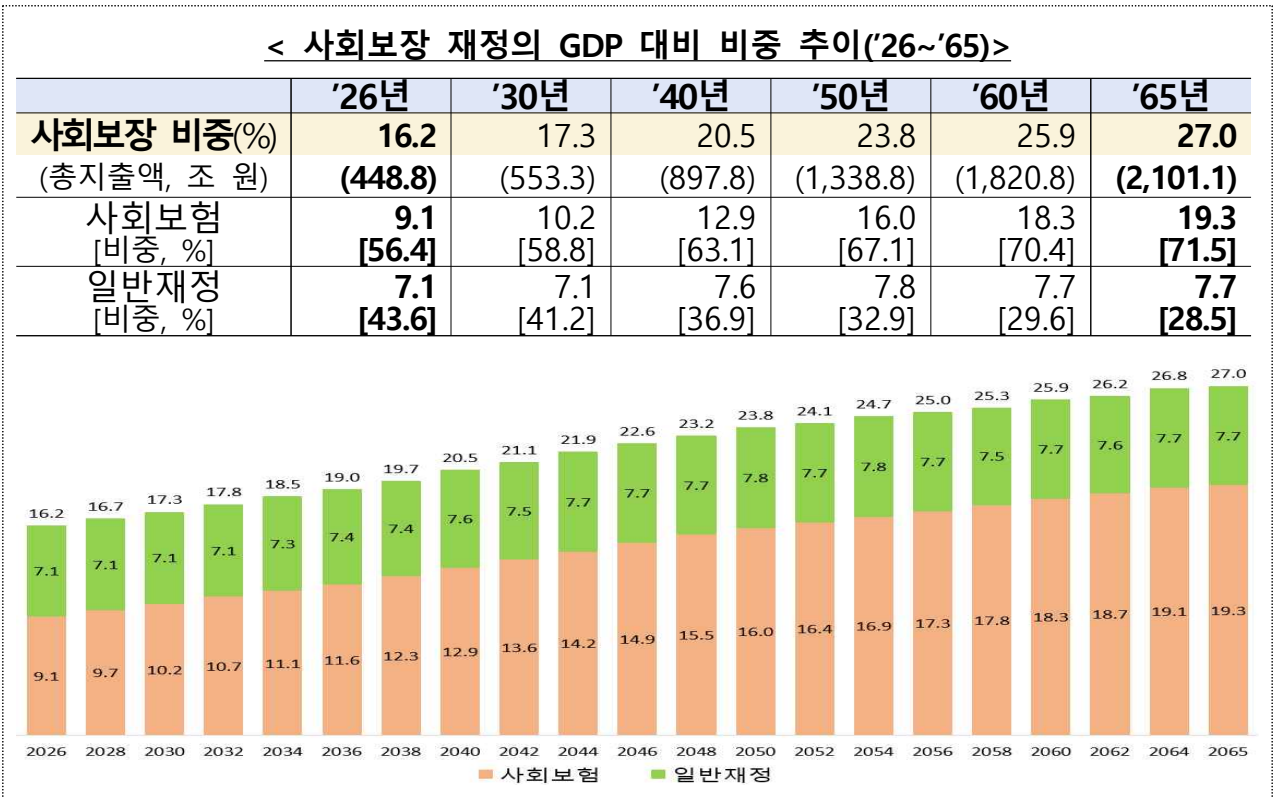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위원장	국무총리	김민석
정부위원 (14명)	보건복지부장관(간사부처)	정은경
	교육부장관	최교진
	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민간위원 (15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신영석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동명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	이동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길현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교성
	영남대 휴먼서비스학과 교수	김보영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태일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	문유진
	백석대 간호학과 교수	백성희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교수	양성일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홍식
	수원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	이은진
	송실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	조소연
	법률사무소 정립 대표 변호사	조혜연
	용산구의회 구의원	함대건

붙임 3 제6차 사회보장 재정추계

- 추계 목적
 -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최소 3년마다 실시, 이를 사회보장위원회 보고 후 공표(사회보장기본법 제30조의3)
- 주요 내용

- (추계기간) 2026년 ~ 2065년 (40년)
 - * OECD 사례, 장기재정전망(40년 이상) 등 국내외 비교·활용을 고려하여 추계기간 설정
- (추계범위) 국제비교가 가능한 OECD 공공사회복지지출 9대 정책영역*을 기준으로 사회보험과 일반재정의 지출 규모 추계
 - * 노령, 보건, 가족, 유족, 근로무능력, 적극적노동시장, 실업, 주거, 기타 사회정책
- (추계전제) 인구변수 장래인구추계(국가데이터처, '23년12월), 거시경제변수 거시경제전망(KDI, '24년 7월) 활용하여, 현행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

- 추계 결과
 - (총지출) 우리나라 사회보장 재정의 GDP 대비 비중은 '26년 16.2%에서 '65년 27.0%로 약 1.7배 확대 전망
 - (분야별) ▶사회보험은 9.1%('26년)에서 19.3%('65년)로 10.2%p 증가, ▶일반재정은 7.1%('26년)에서 7.7%('65년)로 0.6%p 증가



- **(정책영역별)** ▶노령, 보건 영역은 크게 증가, ▶가족 영역은 감소
▶적극적 노동시장·실업은 소폭 증가 ▶그 외 영역은 감소

* (노령·보건) GDP 대비 비중 '26년 10.3% → '65년 21.7%, 영역 내 비중 63.6% → 80.4%

- (노령) 고령인구 비중 확대 및 연금 수급자 증가로 '26년 4.5% → '65년 11.8%
- (보건) 의료 이용 및 장기요양 수요 증가에 따라 '26년 5.8% → '65년 9.9%
- (가족) 저출생에 따른 아동·청소년 인구 감소로 '26년 1.8% → '65년 1.1%
- (적극적노동시장·실업) 일자리지원 및 명목임금상승으로 '26년 1.0% →'65년 1.3%
- (그 외) 근로무능력·주거·기타 사회정책은 '26년 2.7%→'65년 2.0%

< 정책영역별 사회보장 지출의 GDP 대비 비중(%) >

구분	'26년	'30년	'40년	'50년	'60년	'65년
합계(%)	16.2	17.3	20.5	23.8	25.9	27.0
노령	4.5	5.0	6.9	9.1	10.9	11.8
보건	5.8	6.4	7.7	8.9	9.6	9.9
가족	1.8	1.8	1.7	1.5	1.2	1.1
기타 사회정책	1.4	1.3	1.2	1.1	1.0	1.0
유족	0.5	0.5	0.7	0.8	0.9	0.9
근로무능력	1.0	1.0	0.9	0.9	0.9	0.8
적극적노동시장	0.5	0.5	0.6	0.7	0.7	0.7
실업	0.5	0.5	0.5	0.6	0.6	0.6
주거	0.3	0.3	0.2	0.2	0.2	0.2

- **(지출형태별)** ▶현금급여는 6.7%('26년)에서 13.9%('65년)로 증가,
▶현물급여는 9.5%('26년)에서 13.1%('65년)로 증가 전망

* 현금급여 비중은 '26년 41.4%에서 '65년 51.4%로 증가, 우리나라의 현금급여 비중은 OECD 평균 56.1%('21년 기준)보다 낮은 수준

< 현금·현물급여의 GDP 대비 비중(%) 및 구성비(%) >

구분	'26년	'30년	'40년	'50년	'60년	'65년
합계(%)	16.2	17.3	20.5	23.8	25.9	27.0
현금급여*	6.7	7.3	9.2	11.3	13.0	13.9
(구성비)	(41.4)	(42.2)	(44.7)	(47.5)	(50.2)	(51.4)
현물급여**	9.5	10.0	11.3	12.5	12.9	13.1
(구성비)	(58.6)	(57.8)	(55.3)	(52.5)	(49.8)	(48.6)

* 현금급여: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생계급여, 아동수당, 장애수당 등

** 현물급여: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의료 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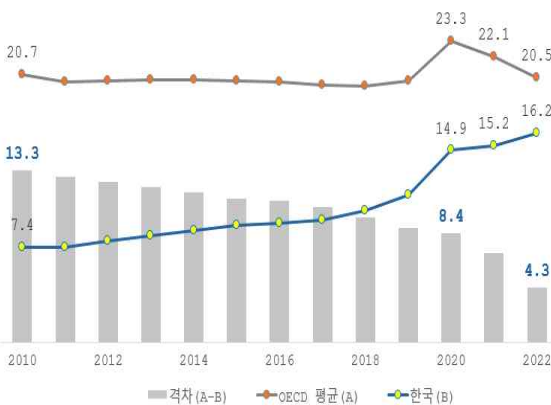
□ 평가 및 시사점

- **(지출수준)** 한국의 사회보장 지출은 빠르게 증가하여, '40년에 20.5%로 OECD 평균('22년, GDP 대비 20.5%) 수준에 이를 전망

- 이는,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지출의 증가에 기인함

* 고령인구 비중('40년): 한국 34.2%, OECD 23.5%로 한국의 고령화율이 약 1.5배 높은 수준

<사회보장 지출 추이(10~22 OECD 평균 한국)>



<사회보장 중장기 재정추계('26~'65)>



- **(증가속도)** 사회보장 지출의 향후 연평균('26~'65년) 증가율은 4.0%로 전망

- '26~'35년까지 5%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다가, 점차 증가세 둔화*

* ('26~'30년) 5.4% → ('35~'40년) 4.9% → ('45~'50년) 3.8% → ('60~'65년) 2.9%

※ 사회보장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11~'21): OECD 평균 5.7%, 한국 12.3%

- **(정책영역별)** 향후 노령·보건*은 OECD 초고령사회 국가 평균을 상회, 가족·주거·근로무능력은 OECD 평균보다 낮아 영역 간 비중 차이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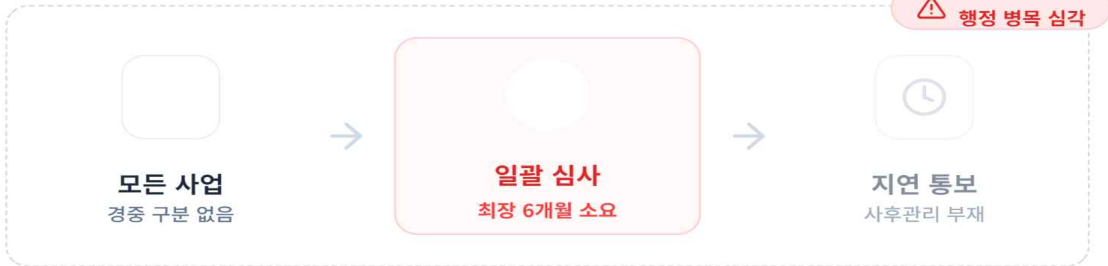
* 보건 '35년, 노령 '50년부터 OECD 초고령사회 국가(23개국) 평균 상회

- ◆ 노령·보건 영역의 경우, 급속한 지출 확대로 사회보장 재정에 상당 부담,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및 지출 효율화 추진 필요
- ◆ 상대적으로 지출 비중이 낮은 아동·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 사회보장 재정의 영역별 장기투자 방향 설정 필요

협의제도 개편 프로세스 비교

획일적 통제(Before)에서 위험도 기반 차등 관리(After)로 체계 개편

Before 기존 : 획일적 전수 검토



After 개선 : 전주기 관리 프로세스

